

[사 건 명] 행심 2019 - 29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하고,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1. 인정사실

- ① 청구인은 2018년 당시 ○○○, ◇◇◇ 및 피해학생과 함께 ○○학교 4학년 ☆반에서 학습을 하는 학생이었다.
- ② ○○○이 2018. 9. 20. 아침활동시간에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참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탔으며, ◇◇◇도 피해학생 위에 올라탔다.
- ③ 피해학생은 청구인을 포함한 ○○○, ◇◇◇이 피해학생 위에 올라탔다고 주장하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0.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0. 10.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학생 위에 올라타지 않고, ○○○이 피해학생 위로 올라가

는 것을 보고서 화장실에 갔으므로,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 □□□, ●●●의 성찰일지를 보면, ○○○이 피해학생을 넘어뜨린 후 올라타고 그 위로 ◇◇◇, 청구인이 순차로 올라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넘어진 피해학생 위로 3명이 올라탄 것은 단순히 장난이라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조치의 상당성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에 대하여는 이 사건을 유발하고 반성의 정도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학급교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9시간)의 조치를, ◇◇◇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서면사과의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피해학생 위로 올라탔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교육,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부가적 특별교육의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 ◇◇◇이 피해학생 위로 올라탄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행위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치는 다소 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위 법률 제17조 제3항의 부가적 특별교육(4시간), 위 법률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4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